

제424회 임시회

'25. 3. 13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사유

-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충청북도의 효율적인 노인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안 제19조)
-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·기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~ 안 제23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등 노인

복지 환경 개선 기여를 목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특히, 충북은 ‘고령화사회 → 고령사회’가 20년 이상 소요된 데 반해, 초고령사회 진입은 10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등 노령인구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임.

< 참고 1 - 충북 고령인구 비율 증가 현황 >

조사 시점	1992 (고령화사회)	2013 (고령사회)	2023. 1 (초고령사회)	2024. 12.
충북 고령인구 비율(%)	7.1%	14.1%	20%	21.9%

※ 자료: 통계청, e-지방지표

- 더욱이, 저출생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노인복지법」을 근거로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조례안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, 사회·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,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등 직접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와 함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, 고령친화도시 구현 등 노인세대에 대한 존경 및 이해 확대 등 인식 변화를 통한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.

< 참고 2 - 타 시도 '노인복지 기본' 조례 제정 현황 >

연번	시·도	조례명	제·개정일
1	서울	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	2024. 5. 20. 일부 개정
2	부산	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	2023. 8. 16. 일부 개정
3	대구	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조례	2024. 10. 30. 제정
4	인천	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지원 기본조례	2023. 11. 9. 일부 개정
5	대전	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	2024. 8. 2. 일부 개정
6	세종	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	2024. 7. 12. 일부 개정
7	울산	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	2020. 5. 28. 일부 개정
8	강원	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	2023. 6. 9. 일부 개정
9	충남	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	2023. 10. 10. 일부 개정
10	제주	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	2023. 11. 20. 일부 개정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 관련 사항,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관련 사항 등 총 4개의 장, 25개의 조문과 시행일 등에 관하여 규정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, 기본이념, 정의를 규정함.

○ 안 제4조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무 준수 사항과 함께 노인 공경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는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노인복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·추진하며,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
- 특히,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,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‘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.

- 노인복지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, 고용현황,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성별 및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시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시 노인의 성별 및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키도록 함.

○ 안 제9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,

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의료복지 시설의 확충, 재가노인 지원

을 위한 요양보호 체계 구축, 노인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료 지원,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운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

-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하여,
노인 참여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,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, 정보화 교육 등 평생학습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
-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,
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직업재활과 교육훈련, 고령치유 등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및 고령친화기업의 육성,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하여,
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
-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,
노인 전용 문화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,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
-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,

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, 세대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

- **고령친화도시¹⁾ 구현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,**
도내 시, 군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대응시책에 대한 교육·홍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함
- **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,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**
관련 교육 및 홍보의 강화,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 강화, 긴급전화의 설치, 학대 및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
- **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의식 향상과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,**
노인의 날 행사 및 어버이날, 경로의 달 행사 등을 포함한 노인 권익행사,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노인

1) □ **고령친화도시 개념**

- 세계보건기구(WHO) '고령친화도시(' 07) : 모든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, 참여,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기찬 노화(active aging)를 추구하는 도시
- 「노인복지법」 '고령친화도시' 조항 포함 (2026. 1. 24. 시행 예정)
제4조의3(고령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고령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·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복지정책에 기여한 개인, 법인·단체 등에 대해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○ 안 제20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노인복지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함

〈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심의사항 〉

- ① 노인복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③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위원회의 구성

: 위원장 1명(노인복지정책 관장 부지사), 부위원장 1명(호선)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

▶ 당연직 : 노인복지·보건·문화·일자리·주택·교통·농업·산림 업무 소관 국장

▶ 위촉직

가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노인복지 관련 기관·시설·단체 등의 종사자

다. 법률가, 보건·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

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위원회의 임기 : 2년(1회 연임 가능)

- 안 제24조, 안 제25조는 노인복지 관련 기관 등과의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 사항,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,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소통과 사회통합 등 노인복지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, 그 제정 의도와 필요성이 충분할 것임.
- 특히, 본 조례안이 제정·시행될 경우 충북의 노인복지 관련 기본조례가 신설됨에 따라,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노인복지 개별조례와의 상호 보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< 참고 3 - 충청북도 노인 관련 조례 >

「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
「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」
「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「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」
「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-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,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조례안 입법에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